

공적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: 1998.03.01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의 정부포상 추천을 위하여 설치한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교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사안에 따라 사무처장 또는 교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4조(회의의 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(개회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심의사항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,

1. 추천 대상자 선정 심의
2. 추천 훈격 심의
3. 공적 심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
제8조(운영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